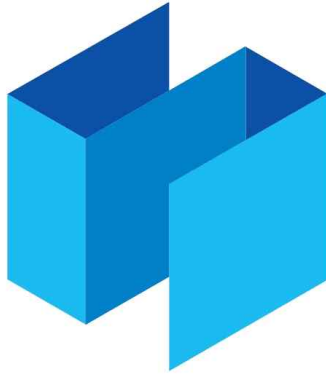


2018학년도

# 학 교 운 영 위 원 회 규 정



충남삼성고등학교

##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초· 중등교육법」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와 학교법인 충남삼성학원 정관 제8장의 규정에 의하여 충남삼성고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장 위원 선출

제2조 (위원의 구성) 위원의 수는 13명으로 하고 학부모위원을 6명, 당연직 교육위원을 포함한 교육위원을 5명, 지역위원을 2명으로 한다. 위원정수 산정을 위한 학생 수 기준일은 3월 1일로 한다.

제3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 33조1)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하며 정당의 당원이 아니어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위촉일 현재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학부모로, 교원위원은 학교에 재임 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자, 또는 수행경력이 있는 자,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4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기 중 임원이 궐원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보궐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나머지 임기가 6개월 미만으로서 위원정수의 4분의 1이상이 궐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1) 국가공무원법 제33조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부권 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완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7. 징계에 의하여 파면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8. 징계에 의하여 해임의 처분을 받은 때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선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 (위원선출시기) 위원 선출은 해당 연도 3월에 실시한다. 단, 학부모 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 10일 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조 (선출관리위원회) ① 학부모위원과 교원위원 선출업무를 관리하기 위하여 위원별로 각각 선출관리위원회를 둔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학부모 또는 교직원 중에서 학교장이 위촉하는 약간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의 경우는 학교장이 위촉하고 교원위원일 경우에는 전체교직원의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추천하는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③ 선출관리위원회에 위원장과 부위원장, 간사 각 1인을 두되 선출관리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위원의 선출에 관한 사무(선거홍보, 후보자등록공고, 선거일공고, 후보자 등록접수, 투개표 실시에 관한 업무, 당선자 결정 및 공고 등)를 관장하며 구성 시부터 위원선출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한다.

⑤ 공정한 선거사무를 위하여 선출관리위원은 운영위원으로 입후보할 수 없다.

제7조 (학부모위원선출) ①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다만, 전체회의에서 선출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

②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15일전까지 위원선출에 대한 공고를 하여야 하며, 전체 학부모에게 그 내용을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③ 입후보자는 선거일 7일전까지 선출관리위원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④ 선출관리위원회는 선거일 3일전까지 선거공보를 학부모에게 가정통지 하여야 한다.

⑤ 위원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8조 (교원위원위촉) ①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민주적 절차와 방법에 의하여 대표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교직원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 학교장이 위촉한다.

② 위원선출에 관한 세부적인 방법과 절차는 선출관리위원회에서 정한다.

제9조 (지역위원선출) ① 지역위원은 교원위원 또는 학부모위원의 추천을 받아 교원위원 및 학부모위원의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위원선출에 필요한 구체적인 선출방법은 당일 회의에서 정한다.

### 제3장 운영위원의 역할

제10조 (위원의 의무)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매 회 참석 시 출장수당을 지급한다.

-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운영위원회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 ③ 위원은 해당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해서는 아니 된다.
-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 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지어서는 아니 된다.

제11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그 자격을 상실한다. 다만, 제3호부터 제6호까지의 경우에는 운영위원회 의결로써 결정한다.

1. 교원위원이 소속을 달리하는 경우
2. 학부모위원의 자녀학생이 졸업·전학·퇴학하는 경우.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만료일까지 위원 자격을 유지한다.
3. 회의소집 통보를 받고도 사전 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는 경우
4.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이 제출한 신상자료에서 학력, 경력 등 주요 내용에 거짓 사실이 발견되는 경우
5. 위원이 사임하고자 사직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6. 위원의 지원을 남용하여 학교와의 거래 등을 통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을 취득하거나 다른 사람을 위하여 그 취득을 알선한 경우

제12조 (임원)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외에 간사 1인을 두고 필요시 감사1인을 둘 수 있다.

- ② 간사와 감사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 제13조 (임원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 진행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 유고 시에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간사는 회의개최와 관련된 제반업무를 처리하고 위원회의 회의사항을 기록한다.

### 제3장 운영위원회 회의 운영

- 제14조 (회의소집) ① 회기는 매년 4월 1일부터 익년 3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회의일수는 연간 1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③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며 정기회는 분기별 1회(총4회)로 하 되, 위원 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회의는 학교장이 위원 개시일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④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위원장이 회의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붙여 위원에게 개인별로 알려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위원회의 개최, 휴회, 폐회 및 기타절차는 일반회의 규칙에 따른다.

- 제15조 (자문 사항) ① 운영위원회는 「초·중등교육법」 제3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 외에 학교운영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학교 교육과정의 운영방법에 관한 사항
  2. 교과용도서 및 교육 자료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정규 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에 관한 사항
  4. 학교 급식에 관한 사항
  5.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에 관한 사항
  6.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
  7. 학생지도를 위한 지원 사항
  8. 교복 및 체육복의 선정, 수학여행 등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 (단, 특정 동아리 등에서 특정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사항은 제외)
  9. 지역사회 교육에 관한 사항
  10. 학부모 및 일반인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의 설치·운영

에 관한 사항

11.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
12.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
13. 기타 학교장이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16조 (안건의 제출·발의 및 회의운영) ①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또는 재적위원 4분의 1 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다만, 예산안과 결산은 학교장이 이를 제출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안건의 자문과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해당 학교장에게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학교장은 교직원 중 관계자를 위원회에 참석시켜 이를 설명하고 질의에 답변케 할 수 있다.
- ③ 전문가의 조언이 필요한 사항은 전문가를 초청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으며 학생들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사항은 학생대표 또는 학부모의 의견을 청취 할 수 있다.
- ④ 위원이 아닌 사람이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발언하고자 할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17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여,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다만, 위원의 자격상실 및 운영위원회 규정의 제·개정 사항은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18조 (소위원회)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화를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구성하여야 한다.

- ②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추천을 통해 9명 이내로 구성하되, 학부모위원을 반드시 1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의 소위원회에는 필요한 경우 학부모, 학생, 외부전문가 등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 ④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 ⑤ 그 밖에 소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 제19조 (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59조의3에 따라 작성하는 회의록에는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하여야 한다.
-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이 회의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한다.
- ③ 제1항의 회의록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59조의3에 따라 운영위원회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의 종료 후 7일 이내에 학교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한다.

- 제20조 (의견수렴) ① 운영위원회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사전에 학교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게시하고, 5일 이상 학부모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 ② 제1항에 따른 열람내용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학부모는 열람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 할 수 있으며, 운영위원회는 제출된 의견을 반영하여 자문해야 한다.
- ③ 운영위원회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밀접하게 관련된 사항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학생대표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④ 학생대표는 학생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학생설문조사 또는 학생회 등을 통하여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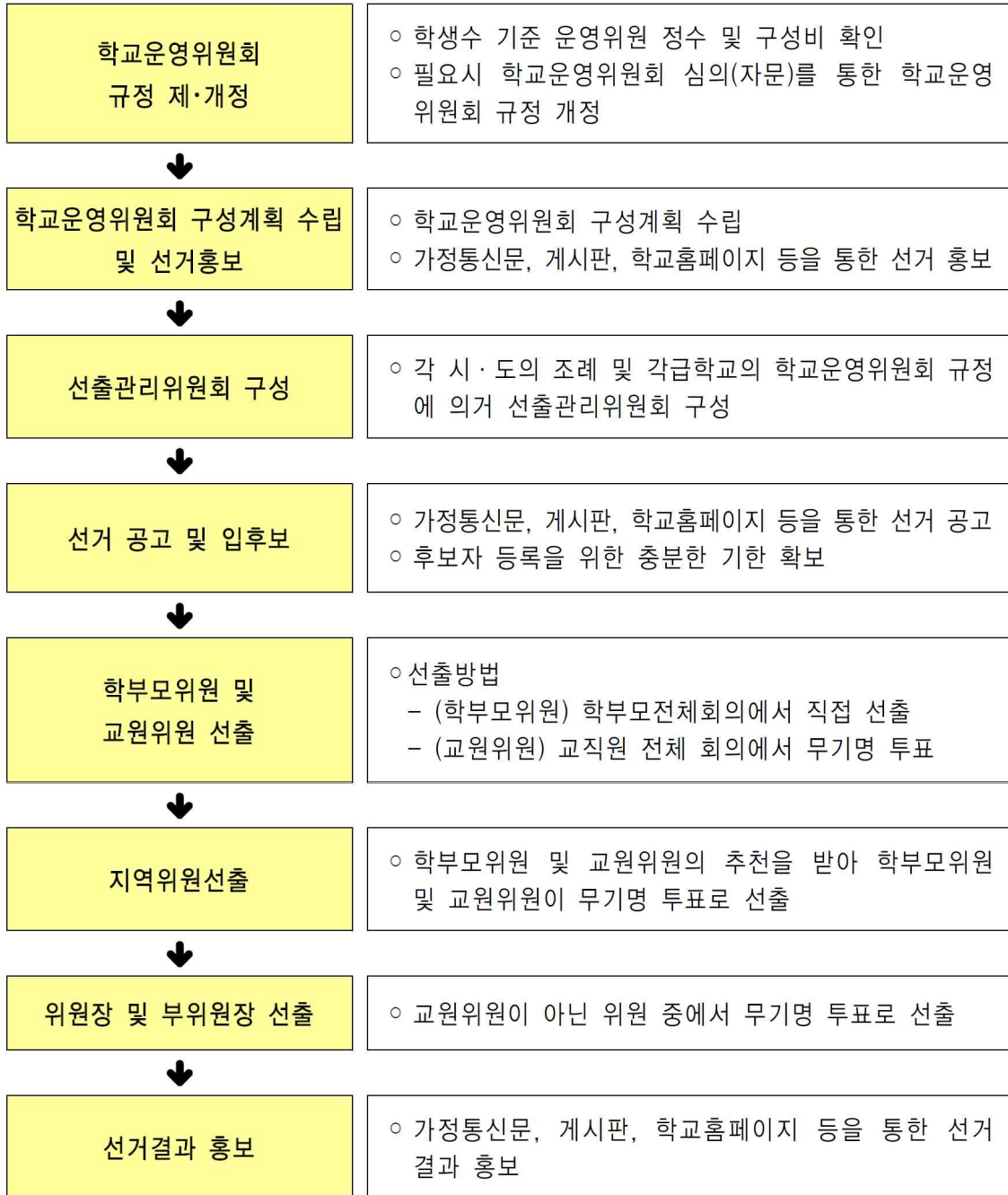
## 제4장 규정의 개정

- 제21조 (제안)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재적위원 과반수 또는 학교장의 발의로 제안된다.
- ② 본 규정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개정되며 위원장은 이를 즉시 공포한다.

## 부 칙

1. 본 규정은 2018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 부록 1.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절차



☞ 운영위원의 선출시기 및 절차는 각 시·도의 조례 또는 학교규정으로 정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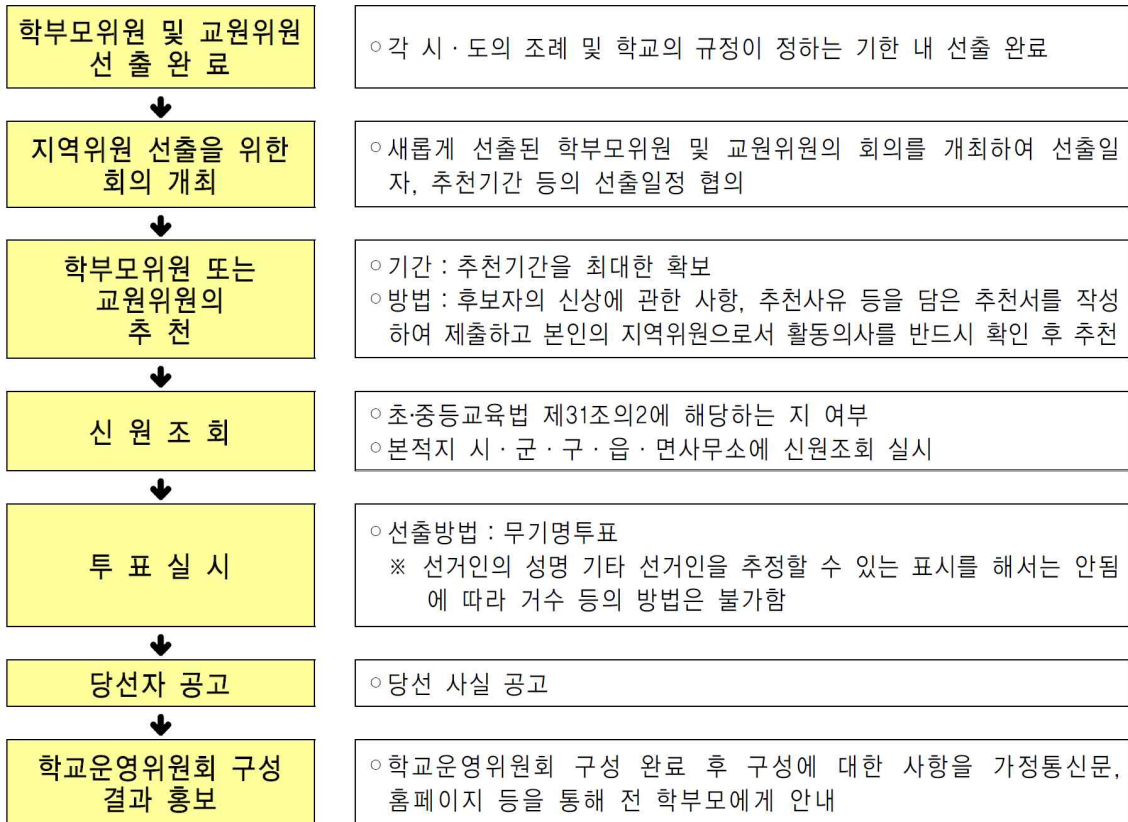


## ▣ 부록 2.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

### ◆ 직접투표에 의한 경우



### ▣ 부록 3. 지역위원 선출 절차



## ▣ 부록 4. 학교정관 관련 자료

### 제8장 학교운영위원회

#### 제1절 학교운영위원회 구성

제66조 (위원의 선출 등) ①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② 학부모위원은 학부모 중에서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 전체 회의에서 직접 선출한다.

③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한 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 다만,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추천할 성별, 연령별 교원 수는 운영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

④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⑤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만료일 10일 전에, 지역위원은 임기만료일 전일까지 선출한다.

제67조 (위원의 임기) ① 위원은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② 위원의 임기 개시 일은 4월 1일로 한다.

제68조 (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 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은 선출일 현재 당해 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의 보호자로, 교원위원은 당해 학교에 재직 중인 자로 한다.

③ 지역위원은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생활 근거지로 하는 자로서 교육행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공무원, 당해 학교가 소재하는 지역을 사업 활동의 근거지로 하는 사업자, 당해 학교를 졸업한 자 및 기타 학교운영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로 한다.

④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69조 (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 하며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아

니 하고서는 학교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 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70조 (위원의 자격상실) 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될 때는 자격을 상실 한다.

1. 교원위원이 퇴직, 휴직하였을 때.
2. 학부모위원은 자녀 학생의 졸업, 전학, 퇴학한때.
3. 회의 소집통지를 받고도 사전연락 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하였을 때.
4. 학부모위원의 선출과정에서 신상자료, 학력, 경력 등의 허위 사실이 발견된 때.

② 제1항 제4호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한다.

제71조 (임원선출 및 임기 등) ① 운영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1인을 두되 임기는 1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교원위원이 아닌 학부모위원과 지역위원 중에서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을 무기명투표로 선출한다.

③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되며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 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④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를 소집·진행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⑤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또는 부위원장)이 임기 중에 궐위된 때에는 보궐 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72조 (학교내외의 자생조직) 학교 내·외의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자생조직(어머니회, 체육진흥회 등)은 자율적으로 운영한다.

## 제2절 운영위원회 운영

제73조 (회기) 운영위원회의 회기는 4월 1일부터 다음해 3월 말일까지로 한다.

제74조 (회의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의 소집 시기는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선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의 장이 위원임기 개시 일로 부터 20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의 소집은 학교장의 요청 또는 재적 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 7일전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 통지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는 정기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정기회 회기는 3일 이내, 임시회 회기는 2일 이내로 한다.

제75조 (안건의 제출 및 발의 등) 운영위원회에서 자문할 안건은 학교의 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연서로 제출하거나 발의한다.

제76조 (의사 및 의결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7조 (회의의 공개 등)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학생교육 또는 교원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공개하지 아니 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가 회의를 개최할 때에는 가정 통신문, 학교 게시판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의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78조 (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고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위원장이 서명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에 비치하여 학부모, 교원 및 지역 주민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말에 자체 운영위원회의 활동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 교원, 법인 이사회 및 관할교육청에 배포하고 다음 정기회의 시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④ 회의록은 3년간 보존한다.

제79조 (간사 등) 운영위원회의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며, 학교장이 교직원 중에서 위촉한다.

### 제3절 운영경비 등

제80조 (운영 경비 등) 위원의 연수 시 교통비, 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규정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다.

제81조 (이사장의 개선 요구)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학교의 건학 이념과 목적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에 보고하고, 학교의 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에 그 개선을 요구할 수 있다.

제82조 (위임규정) 운영위원회의 구성·기능 및 운영 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